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6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3 중 총계 “632”를 “6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7”로 하며, 전문경력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60”을 “1,861”로 하고, 일반직 계 “1,860”을 “1,8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30”을 “1,831”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0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20. (생략) <u><신설></u>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u>21.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u>
제60조(한시정원) ① (생략) <u>②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 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 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5 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 다.</u> ③ ~ ⑥ (생략) <u><신설></u>	제60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u><삭제></u> ③ ~ ⑥ (현행과 같음) <u>⑦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u>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8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2</u>	<u>633</u>	+1
·	·	·	
·	·	·	
일반직 계	<u>626</u>	<u>627</u>	+1
·	·	·	
·	·	·	
전문경력관	<u>2</u>	<u>3</u>	+1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60</u>	<u>1,861</u>	+1
일반직 계	<u>1,860</u>	<u>1,861</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30</u>	<u>1,831</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